

제주지방법원 2017. 10. 18 선고 2017나1000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지분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제주지방법원 2017. 10. 18 선고 2017나10008 판결

제주지방법원 2016. 12. 6 선고 2015가단5665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변론 종결 2017. 9. 13.

판결 선고 2017. 10. 18.

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6. 12. 6. 선고 2015가단56658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에게, 피고 C은 제주시 D 전 1,669m²의 1,471/1,669 지분(소장에

기재된 '1,501/1,699 지분'은 오기로 보인다) 중 1/5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와 1994. 5. 4. 접수 제220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E 임야 91㎡ 중 1/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와 2013. 6. 5. 접수 제476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, 그리고 F 임야 4,588㎡ 중 1/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와 2013. 8. 23. 접수 제705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피고들은 G 지상 목조구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158.68㎡의 각 1/2 지분 중 1/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와 2013. 10. 25. 접수 제86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'2. 추가판단'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판단

가. 원고는, 이 사건 제2, 3토지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I이 문맹일 뿐만 아니라 담도암에 걸려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,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I이 제주시 소재 M병원에서 2013. 10. 14.부터 2013. 11. 15.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, 2013. 11. 15. 06:14 폐혈증쇼크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15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I이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

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원고는,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제출된 보증서에 증여자 H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바,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,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(1992. 11. 30. 법률 제4502호, 실효)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,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,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바(대법원 2006. 2. 23. 선고 2004다29835 판결 등 참조),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진영

판사채희인

판사성준규